



제 43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이용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943호)

2026. 2.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기본공제금액에 물가연동제 도입(이용우의원안)	2

I. 개요

1. 이용우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13943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이용우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5. 11. 6.
- (3) 회 부 일 : 2025. 11. 7.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과 일정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09년 소득공제 150만원이 설정된 이후 현재에 이르도록 변동이 없었음. 그 사이에 명목 소득이 증가하여 근로소득 세수는 5배가 늘어나는 등 사실상 근로소득 증세의 효과를 보이고 있음.

이를 바로잡고자 소득공제액을 170만원으로 상향하고자 함.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22개국이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운영하고 있음. 지난 15년간 물가가 40%가 상승하였으나, 현행 소득세법은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지 않고 명목 소득만으로 세금을 징수하여 그 부담함이 지적되어 왔음.

이에 기본공제 금액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분을 반영한 금액으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50조).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기본공제금액에 물가연동제 도입(이용우의원안)

현행	개정안
☐ 기본공제(제50조) ○ 대상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 공제금액: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수 × 연 150만원 -해당 거주자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의 배우자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	☐ 기본공제액 상향 등 ○ (현행과 같음) ○ 공제금액: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수 × 연 170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기준연도 대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분을 반영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현행과 같음) ○ 시행일: 2026년 1월 1일 ○ 적용례: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

* 이용우의원안 2025. 11. 6. 제출(의안번호 13943)

☐ 개정안은 현재 인당 연 150만원으로 책정된 인적공제 기본공제금액을 170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기준연도 대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분을 반영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 기본공제 등 인적공제 제도는 납세의무자의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부양가족의 상황에 따라 세부담에 차이를 둠으로써 응능부담의 원칙에 입각한 과세 실현을 취지로 하는 제도임.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 및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를 포함)인 배우자·부양가족 등에 대하여 1인당 연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말함.

□ 개정안은 물가 상승, 저출생 문제 심화, 경기침체기 근로소득자 가처분소득 증가 필요성 등에 따라 인당 기본공제액을 상향 조정하고 물가와 연동되도록 하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정책효과가 기대됨.

첫째, 현행 기본공제 금액이 설정된 2009년 이후 물가상승으로 인해 실질적인 조세부담의 상승효과가 있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기본공제액은 2008년까지는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10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2009년에 50만원 상향된 150만원으로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음. 그런데 2009년 대비 2024년까지의 누적 물가상승률이 36.1%임에도 불구하고 1인당 기본공제액은 2009년부터 현재까지 동일한 금액(150만원)을 유지하고 있어 근로자의 실질조세부담률이 높아지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음.

따라서 개정안에 따라 기본공제금액을 증액할 경우, 납세의무자의 실질 조세 부담이 경감되고 서민·중산층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연도별 소비자물가지수]

연도	2009년	2011년	2013년	2015년	2017년	2019년	2021년	2024년
소비자 물가지수	83.9	89.9	93.0	94.9	97.6	99.5	102.5	114.2

자료: 국가데이터처 “소비자물가조사”, 2020년=100 기준

둘째, 기준연도 대비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기본공제금액을 매년 정하도록 하는 경우 매년 기본공제금액에 경제상황의 변화가 반영되어 납세의무자의 실질 조세부담률을 증가시키지 않는 합리적인 수준의 기본공제수준이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물가연동제 도입시 물가상승률 외의 다양한 조세정책적 요인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음.

조세제도 측면에서 볼 때, 현행 소득세제는 과세표준구간 및 구간별 세율의 주기적인 변경, 세액공제·소득공제 제도의 신설·조정 등을 통해 물가인상에 따른 실질 조세부담을 완화해 왔음. 따라서 기본공제 금액에 대한 물가연동제 도입을 통해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기존 제도의 평가 및 개선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

또한, 기본공제 금액에 대한 물가연동제 도입은 저소득 면세자의 비율을 확대할 수 있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음. 2023년 기준 전체 근로소득자 중 면세점 이하의 저소득자 비율은 33%인데, 물가연동제 도입에 따라 기본공제 규모가 확대될 경우 현재보다 면세자 비율이 증가할 수 있음.

[근로소득자 중 면세자 비중]

(단위: %)

연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비중	46.8	43.6	41.0	38.9	36.8	37.2	35.3	33.6	33

주: 귀속연도 기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5 대한민국 조세”

따라서, 소득세제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는 현행 공제·감면제도의 효과 및 한계, 물가연동제 도입에 따른 과세기반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득세제 전반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둘째, 개정안에 따라 기본공제금액을 물가에 연동하여 자동 조정할 경우 소득세 분야의 구조적인 세수감소가 예상됨. 2023년 근로소득 관련 연말정산 기준으로 인적공제 적용 대상자는 2,078만 9,197명이고, 해당 공제금액은 57조 1,035억 7,500만원 수준인데, 개정안과 같이 기본공제 금액을 상향하고 이를 물가상승에 연동하여 증가시킬 경우 세수감소 규모가 확대될 수 있음.

[2023년 기준 종합소득·근로소득 관련 기본공제 적용인원 및 금액 현황]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인원	금액
종합소득	11,475,498	31,167,641
근로소득	20,789,197	57,103,575

자료: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에서 납부세액까지 산출 현황」, 국세통계연보(3-1-3),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 국세통계연보(4-2-2), 국세통계포털(TASIS)국회에 산정정책처는 개정안에 따라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기본공제금액을 170만원으로 인상한 후, 매년 물가에 연동하여 조정할 경우 재정수입 감소는 2026년 2조 3,250억원, 2030년 4조 1,769억원 등 2026~2030년 5년간 총 14조 5,291억원(연평균 2조 9,058억원)으로 추계하고 있음.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라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기본공제금액을 150만원에서 170만원으로 조정한 후 매년 물가에 연동하여 조정할 경우, 재정수입 감소는 2026년 2조 3,250억원, 2030년 4조 1,769억원 등 2026~2030년 5년간 총 14조 5,291억원(연평균 2조 9,058억원)으로 예상됨.

[개정안에 따른 소득세 수입 변화]

(단위: 억원)

	2026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기본공제 제도에 물가연동제 도입 (안 제50조제1항)	△23,250	△22,470	△25,864	△31,937	△41,769	△145,291	△29,05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문 의 처

02)6788-5157